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 ---------- ----------.	○ 환적화물과 관련없는 조문 삭제 - 영 제163조는 승선 또는 탑승신고 절차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 ---------- ---------- ----- 것(같은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포	○ ‘복합환적’에 동일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환적하는 경우를 포함 - 인천세관 관할 인천항-인천공항 간 환적 포함 및 향후 부산세관 관할

	함한다)을 ---.	부산항-가덕도공항 간 환적 대비
3.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 국제항 간 보세화물 또는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를 ----------.	○ ‘내국환적운송’에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정의 조항과 본문 내용(제9조)을 일치시킴 ○ 관세법 개정(2020.12.22.)에 따른 용어 정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2. ---------- - 국제항 간 국제무역선----------	○ 용어 정비
②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② ----------	○ 인용 고시명 띄어쓰기 수정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하선신고 등)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른 환적화물의 일시양륙신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하선(하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고로 갈음한다.	제4조(하선신고 등) ① 선사, 항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려는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하선 또는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환적물류와 부합하지 않는 규정상 미비점 보완 - 환적화물은 국내 보세구역에 일시 보관 후 국외로 반출되는 화물로서 일시 양륙이 아닌 하선(기) 대상 - 반면, '일시양륙신고'는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없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화물 등을 하역(하선과 적재) 작업상 필요에 따라 양륙하는 경우 적용
②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환적화물을 하역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하선 또는 하기하여 ----------.	○ 용어 정비
1.「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15조 및 제28조에 따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 용어 정비

라 세관장이 하선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 보세구역이 아닌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3. ---------- ---- 고려하여 ---------- ---------- 하선 또는 하기장소가 ---------- ---------- -------	○ 용어 정비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및 반입사유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 ---------- 신고해야 -----.	○ 인용조문 오류 정비
④ 하선(하기)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선	④ 하선 또는 하기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 제5항을 신설하고, 단서를 제5항으로 이기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기에서 양륙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다른 여객기로 환적하려는 경우, 하기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여객기 계류장 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양륙하였다가 출항하는 여객기에 적재할 수 있다.	내에 하선 또는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동일 공항 내에서 입항 후 10일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항공기로 환적하려는 경우(위험물품은 제외한다)에는 하기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항 단서를 제5항으로 이기하고, 계류장 내 일시보관 할 수 있는 대상 화물과 보관기간을 확대 ※ (대상) 여객기 환적화물→여객기+화물기 환적화물 (기간) 24시간→10일(+10일 연장 가능)

제5조(반출입신고)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을 반출입할 때 반입예정정보 또는 반출승인정보와 물품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 후 반입 즉시 또는 반출 전에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반출입신고) ① ---------- ---------- ---------- ---------- 후 세관장에게 반입 즉시 반입신고를 하고, 반출 --------- 반출신고를 해야 ----------.	○ 조문 정비
②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House B/L 단위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② ---------- ---------- ---------- 해야 ----. ---------- ----------.	○ 용어 정비
1.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운송용기(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 운송용기(컨테이너) 단위	1. ---------- 컨테이너 단위로 ---------- 환적화물: 컨테이너 단위	○ 조문 정비
2. 공항내 화물터미널에서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 Master B/L 단위	2. ---------- B/L 단위---------- 환적화물: ----------	○ 띄어 쓰기
3. 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보세운	3. ----------	

송하여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 Master B/L 단위 <신 설>	---------- -- 환적화물: ----------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기장소가 공항 화물터미널이면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반출하지 않고 동일 터미널에서 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화물로서 운영인이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동일한 터미널에서 환적되는 항공환적화물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
③ 보세구역 운영인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통고하여야 한다.	④ ---------- ---------- ---------- ---------- 통고해야 한다.	○ 제3항→제4항으로 조항 정비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영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 -- 「관세법 시행령」 ----------	○ 환적신고 절차 간소화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선적예정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말한다.)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적출입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 적출 후 적입작업을 하기 전까지 ---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환적신고를 하되, 적출 후 적입작업 전에 한번 만 신고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삭 제>	○ 본문으로 내용 이동
2. 제12조에 따른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삭 제>	○ 비가공증명절서 발급 전 환적신고 의무 삭제하여 증명절차 간소화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해당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② 제1항---------- ---------- 컨테이너 보세창고(CY)의 컨테이너 조작장(CFS) ---------- ---------- 해야 -----. ------	○ 조문 정비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4. ----------의왕ICD -------- ---------- ---------- ---------- ---------	○ 용어 정비
5.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 컨테이너 조작장(CFS)----- ---------- ----------	○ CFS 이외의 보세구역에서도 적출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1항---------- ---------- ---------- ----------.	○ 인용조문 정비
제7조(보세운송) ①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입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제7조(보세운송) ① ---------- ---------- ---------- ------- 해야 ----. ----------	○ 용어 정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2.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항공기로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우편법」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EO인 보세운송업자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경유지 없이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내 보세구역까지 Master B/L 단위로 보세운송하는 화물	다. 체신관서---------- ---------- ---------- ---------- ------ 체결하고, 항공으로 반입된 환적 화물을 ----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거나 해상으로 반입된 환적 화물을 경유지 없이 부두내 보세구역에서 통관우체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 해상화물로 입항하여 인천해상교환국에서 우편물로 접수하는 우편환적화물에 대해서도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목적지는	② ----------	○ 용어 정비

물품을 적재하려는 공항 및 항만의 하선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만이나 공항의 하선 또는 하기장소----------.	
③ 보세운송 물품이 컨테이너화물(LCL화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보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개장하여야 한다.	③ ---------- --- 개장해야 -----.	○ 용어 정비
④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내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중 환적 물동량,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적화물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 보세구역 ----------.	○ 조문 정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	⑤ ----------	○ 용어 정비

역간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출신고서에 보세운송업자와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운송 목적지가 변경되면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보세운송업자는 목적지를 정정신고하여야 한다.	---------- ---------- ---------- ----------. ---------- ---------- ---------- 정정신고해야 ------.	
⑥ 화주 및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환적화물을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제세 등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업체가 간이보세운송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 ---------- ---------- ---------- ---------- 제공해야 ------. ---------- ---------- ---------- --.	○ 용어 정비
제8조(일관운송 환적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적화물(이	제8조(복합환적절차) ① ---------- ---------- 복합환적화	○ 조문명 정비 - 기존 일관운송 환적이

하 “일관운송 환적화물”이라 한다)은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1. ~ 5. (생 략)	물은 적재화물목록---------- ---------- ---------- 보세운송신고- ----------. 1. ~ 5. (현행과 같음)	입항지와 최종 적재항이 다른 경우에 이루어짐에 따라 정의(복합환적) 조항에 맞게 조문명 정비 ○ 복합환적화물 반출입 신고 정상화 - 본 조항은 보세운송신고 간소화에 절차임에도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함에 따라 CY 운영인이 자사 시스템을 조작하여 반출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작하거나 수출입기업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화물통관진행정보에 실물흐름이 표출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일관운송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House B/L 단위로 운송업체(화주등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등을 말한다)와 반출 예정지 보세구역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복합환적화물-------- ---------- 적재화물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	○ 용어 정비
③ 제1항에 따라 일관운송 환적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운송인은 적하목록 사본을 소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복합환적화물-------- ---------- 적재화물목록 ---------- ---------- 인계인수해야 ---- ---- 해야 한다.	○ 용어 정비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④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입신고가	○ 인용조문 정비

때에는 하선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재수출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출항하는 선박에 직접 적재하게 할 수 있다.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으로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출항하는 선박에 직접 적재하게 할 수 있다.	
⑤ 일관운송 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하선신고일부터 7일로 한다.	⑤ 복합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하선 또는 하기신고일부터 7일로 한다.	○ 용어 정비
⑥ 일관운송 환적화물의 일관운송 신청인이 신청한 물품을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항지 세관장에게 일관운송 환적화물 운송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선신고인이 해당 물품의 하선장소를 최초 입항지(입경지) 보세구역으로 변경하는	⑥ 제1항에 따라 복합환적화물 운송신고한 ---------- ---------- ---------- 복합환적화물 운송신고를 취하해야 ----------. ------- 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 반출예정지 보세구역을 ----------	○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

것으로 취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에 의한 화물운송) ① 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9조(내국환적운송) ① ---------- 국제항 간 국제무역선----------.	○ 조문명 정비 - 정의(내국환적운송) 조항에 맞게 조문명 정비 ○ 용어 정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출화물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적용대상 명확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적재 및 하선하려는 화물의 명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세관신고를 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신고해야 ----. 이 경우--- ---------- 적재화물목록 -------.	○ 용어 정비
제10조(보수작업) ① 세관장은 환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라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작업) ① ---------- ----------.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긴급하게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 보수해야 ----------	○ 용어 정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적재) 환적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출항지에서 적재하려는 선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할 때 제출한 화물정보와 비교하여 컨테이너봉인번호 상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선박 출항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수(검정)업자가 물품을 검수 또는 검정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적재) ---------- 제출해야 ----. ----------	○ 용어 정비
제12조(비가공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제12조(비가공증명서 발급) ① ------ 보세구역----------	○ 용어 정비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 ---------- ---------- ----------.	
② 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별지 제5호서식---------- ---------- 제출해야 ----. 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Ship To Ship 환적 화물에 대한 일시장치 확인서 제출 생략 근거 마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③ ----------	○ 용어 정비

때에는 제1항 규정 충족 여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 여부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충족 ---------- ---------- ---------- ---------- 심사해야 ---------- ---------- ---------- ----------.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 해야 ----.	○ 재검토기한 재설정 ○ 용어 정비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표와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표와 같음	○ 신고유형 중 비가공증명인 경우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표와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표와 같음	○ 용어 정비 - 수출(입)자 → 반입자
(별지 제2호의2 서식) 첨부 표와 같음	(별지 제2호의2 서식) 첨부 표와 같음	○ 띄어 쓰기

(별지 제3호 서식) 첨부 표와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첨부 표와 같음	○ 용어 정비
(별지 제3호의2 서식) 첨부 표와 같음	(별지 제3호의2 서식) 첨부 표와 같음	○ 용어 정비
(별지 제4호 서식) 첨부 표와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첨부 표와 같음	○ 용어 정비
(별지 제5호(A) 서식) 첨부 표와 같음 (Annexed Form No. 5(B)) 첨부 표와 같음	(별지 제5호(A) 서식) 첨부 표와 같음 (Annexed Form No. 5(B)) 첨부 표와 같음	○ 첨부 서류에서 환적신고서 삭제 ○ 띄어 쓰기

[별지 제1호서식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환적 신고서</td><td>처리기간
1 일</td></tr>
<tr><td colspan="4">1. 신고인 신고자부호 [ ]
상호 _____
주소 _____
성명 _____</td><td>2. 신고번호</td><td>3. 신고일자</td></tr>
<tr><td colspan="4"></td><td>4. 신고유형
(A적출입작업/B환적증명)</td><td>5. 장치장소</td></tr>
<tr><td colspan="7">A. 적출입작업인 경우</td></tr>
<tr><td rowspan="2">9. 적출내역</td><td>입항일</td><td>입항선(기)명</td><td>컨테이너번호</td><td>화물관리번호</td><td>B/L 번호</td><td>품명</td><td>수량/중량</td><td>선적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10. 적입내역</td><td>환적(예정)일</td><td>환적(예정)선(기)명</td><td>컨테이너번호</td><td>화물관리번호</td><td>B/L 번호</td><td>품명</td><td>수량/중량</td><td>목적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B. 비가공증명인 경우</td></tr>
<tr><td rowspan="2">화물관리번호</td><td rowspan="2">컨테이너번호
(산물은 B/L번호)</td><td rowspan="2">품명</td><td colspan="2">포장명세</td><td rowspan="2">중량
(Kg)</td><td rowspan="2">환적
(예정)일</td><td rowspan="2">환적(예정)
선(기)명</td><td rowspan="2">목적국/
목적항</td><td rowspan="2">환적
(예정)항</td></tr>
<tr><td>개수</td><td>단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관세법」 제141조와 「관세법시행령」 제164조 및「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6조에 따라 환적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환적 신고서

처리기간
1 일

1. 신고인 신고자부호 [ ]	2. 신고번호	3. 신고일자
상호 _____ 주소 _____ 성명 _____	4. 신고유형 (A.적출작업/B.적입작업)	5. 장치장소

9. 적출내역	입항일	입항선(기)명	컨테이너번호	화물관리번호	B/L 번호	품명	수량/중량	선적지

10. 적입내역	환적(예정)일	환적(예정)선(기)명	컨테이너번호	화물관리번호	B/L 번호	품명	수량/중량	목적지

「관세법」 제141조와 「관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6조에 따라 환적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현행]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환적화물 보수작업 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3">수출(입)자</td><td>상 호</td><td colspan="2"></td><td rowspan="3">신청자</td><td>상 호</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주 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입(출)항일자</td><td>선하증권번호</td><td colspan="2">작 업 목 적</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선(기)명</td><td>내외국물품구분</td><td colspan="2">작 업 방 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반입신고번호</td><td>장치장소</td><td colspan="2">작 업 기 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개수</td><td>품 명</td><td>규 격</td><td>수 량</td><td colspan="2">가 격</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사용재료명세</td></tr>
<tr><td colspan="2">품 명</td><td>규 격</td><td colspan="2">수 량</td><td colspan="2">가 격</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수작업 승인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td><td colspan="4">「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td></tr>
<tr><td colspan="2">첨부서류 없음</td><td>수수료 없음</td><td colspan="4"></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table>
<tr><td colspan="6">환적화물 보수작업 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3">반입자</td><td>상 호</td><td colspan="2"></td><td rowspan="3">신청자</td><td>상 호</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주 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입(출)항일자</td><td>선하증권번호</td><td>작 업 목 적</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선(기)명</td><td>내외국물품구분</td><td>작 업 방 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반입신고번호</td><td>장치장소</td><td>작 업 기 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개수</td><td>품 명</td><td>규 격</td><td>수 량</td><td>가 격</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7">사용재료명세</td></tr>
<tr><td colspan="2">품 명</td><td>규 격</td><td colspan="2">수 량</td><td colspan="2">가 격</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수작업 승인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td><td colspan="4">「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td></tr>
<tr><td colspan="2">첨부서류 없음</td><td>수수료 없음</td><td colspan="4"></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현행]

(별지 제2호의2 서식)

<table>
<tr><td colspan="5">액체환적화물 보수작업 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4">신청자</td><td>상 호</td><td colspan="2"></td><td>신청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성 명</td><td rowspan="3"></td><td>반입신고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신고번호</td><td rowspan="2" colspan="2"></td></tr>
<tr><td>주 소</td><td>장 치 장 소</td></tr>
<tr><td colspan="3">환급대상반입(적재)
확인서 신고번호</td><td></td><td>작 업 목 적</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작 업 기 간</td><td></td><td>작 업 방 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화물관리번호</td><td colspan="2">품 명</td><td colspan="2">포장종류</td><td>중 량</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7">사용재료명세</td></tr>
<tr><td>란번호</td><td>구분</td><td>품 명</td><td>규 격</td><td>HS Code
(10단위)</td><td>중 량</td><td>가 격(미화)</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수작업 승인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td><td colspan="3">「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td></tr>
<tr><td colspan="3">첨부서류 없음</td><td colspan="4">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의2서식)

<table>
<tr><td colspan="6">액체환적화물 보수작업 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4">신청자</td><td rowspan="2">상 호</td><td rowspan="2"></td><td>신청번호</td><td colspan="2"></td></tr>
<tr><td>반입신고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td><td>사용신고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td><td>장 치 장 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환급대상반입(적재)
확인서 신고번호</td><td></td><td>작 업 목 적</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작 업 기 간</td><td></td><td>작 업 방 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화물관리번호</td><td>품 명</td><td colspan="2">포장종류</td><td>중 량</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7">사용재료명세</td></tr>
<tr><td>란번호</td><td>구분</td><td>품 명</td><td>규 격</td><td>HS Code
(10단위)</td><td>중 량</td><td>가 격(미화)</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 보수작업 승인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td><td colspan="3">「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td></tr>
<tr><td colspan="3">첨부서류 없음</td><td colspan="4">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현행]
(별지 제3호 서식)

보 수 작 업 완 료 보 고 서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보수작업승인번호		보수작업의 종류	
장치장소		작업완료년월일	
신고번호			

내외국	기호와 번호	포장의 종류	품 명	수량	가격	사유재료의 품명	수량	가격
						잔존재료의 품명	수량	가격

20 년 월 일

위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보 수 작 업 완 료 보 고 서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보수작업승인번호		보수작업의 종류	
장치장소		작업완료연월일	
신고번호			

내외국	기호와 번 호	포장의 종 류	품 명	수 량	가 격	사유재료의 품 명	수 량	가 격
						잔존재료의 품 명	수 량	가 격

20 년 월 일

위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현행]

(별지 제3호의2 서식)

액체화물 보수작업 완료보고서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제2항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보수작업승인번호		보수작업의 종류		
장치장소		작업완료년월일		
신청번호				
화물내역				
구분	반입근거	품 명	HS Code (10단위)	중 량
환적화물				
사용재료				
작업결과				

20 년 월 일

위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의2서식)

액체화물 보수작업 완료보고서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제2항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보수작업승인번호		보수작업의 종류		
장치장소		작업완료연월일		
신청번호				
화물내역				
구 분	반입근거	품 명	HS Code (10단위)	중 량
환적화물				
사용재료				
작업결과				

20 년 월 일

위 보고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현행]

(별지 제4호 서식)

적재결과 이상보고서

처리기한
즉 시

①적하목록관리번호	②출항 선(기)명	③출항일자	④적재완료일자	⑤하역회사명	⑥제출번호

⑦MSN	⑧HSN	⑨M/AWB번호	⑩H/AWB번호	⑪적하목록 내용		⑫적재결과		⑬사고내역	⑭사고개수	⑮배정창고
				포장개수	총중량	포장개수	총중량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1조에 따라 적재작업결과 상기와 같이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함을 보고합니다.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적하목록 이상보고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확인자(화물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적재결과 이상보고서

처리기한
즉 시

①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	②출항 선(기)명	③출항일자	④적재완료일자	⑤하역회사명	⑥제출번호

⑦MSN	⑧HSN	⑨M/AWB번호	⑩H/AWB번호	⑪적재화물목록 내용		⑫적재결과		⑬사고내역	⑭사고개수	⑮배정창고
				포장개수	총중량	포장개수	총중량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1조에 따라 적재작업결과 상기와 같이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함을 보고합니다.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적재화물목록 이상보고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확인자(화물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A)서식 현행]

(별지 제5호(A) 서식)

비가공 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신 청 자 (선박대리점 또는 포워더)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2. 입(출)항 및 하역 명세

물품내역	물 품 명		세 번 (6 단 위)	
	모 델 / 규 격		원 산 지	
	수 량		중 량	
입항내역	입 항 일 자 / 장 소		하 선 (하 기) 일 자	
	입항선박(항공기)/항차		입항B/L(AWB) No.	
출항내역	출 항 일 자 / 장 소		적 재 일 자	
	출항선박(항공기)/항차		출항B/L(AWB) No.	
	목 적 지		컨 테 이 너 No.	

3. 신청 내역

1. 상기 물품은 대한민국을 경유하면서 대한민국 세관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것으로서, 하역·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 없이 최종 목적지(국가)로 향하는 물품이며, 동 신청서의 모든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비가공 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 서류 : 1. 환적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1부.	수수료
2. 입출항 선하증권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부.	
3. 일시장치 확인서 1부	4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A)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A)서식)

비가공 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신 청 자 (선박대리점 또는 포워더)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2. 입(출)항 및 하역 명세

물품내역	물 품 명		세 번 (6 단 위)	
	모 델 / 규 격		원 산 지	
	수 량		중 량	
입항내역	입 항 일 자 / 장 소		하 선 (하 기) 일 자	
	입항선박(항공기)항차		입항B/L(AWB) No.	
출항내역	출 항 일 자 / 장 소		적 재 일 자	
	출항선박(항공기)항차		출항B/L(AWB) No.	
	목 적 지		컨 테 이 너 N o .	

3. 신청 내역

1. 상기 물품은 대한민국을 경유하면서 대한민국 세관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것으로서, 하역·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 없이 최종 목적지(국가)로 향하는 물품이며, 동 신청서의 모든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비가공 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 서류 : 1. 입출항 선하증권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부. 2. 일시장치 확인서 1부	수수료 4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nexed Form No.5(B) 현행]
(Annexed Form No. 5(B))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Original/Duplicate)

Issue No _____

1. Applicant (shipping agent or forwarder)

Company name			
Business License		Representative	
Address			

2. Arrival / departure and unloading details

Item Details	Description		HS Code(6)	
	Model / Size		Country of Origin	
	Quantity		Weight	
Inbound Details	Date / Port of Arrival		Date of Unloading	
	Vessel(Flight)/Frequency		B/L(AWB) No.	
Outbound Details	Date / Port of Departue		Date of Loading	
	Vessel(Flight)/Frequency		B/L(AWB) No.	
	Destination		Container No.	

3. Application

1. I confirm that the cargo above is temporarily installed in our bonded area under the control of KCS(Korea Customs Service) preparing for their final destination(country) without any additional works excluding unloading, reloading and other demanded operations to sustain the stationary state, and all information stat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accurate.
2. I apply for the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Special Directive on the Processing Procedure of Transshipment Cargo」.

20 . . .

Applicant (signature)

○○ Customs, Republic of Korea, certifies non-manipulation of the cargo above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Special Directive on the Processing Procedure of Transshipment Cargo」.

20 . . .

Director of ○○ Customs (sea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nexed Form No.5(B) 개정(안)]
(Annexed Form No.5(B))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Original/Duplicate)

Issue No _____

1. Applicant (shipping agent or forwarder)

Company name			
Business License		Representative	
Address			

2. Arrival / departure and unloading details

Item Details	Description		HS Code(6)	
	Model / Size		Country of Origin	
	Quantity		Weight	
Inbound Details	Date / Port of Arrival		Date of Unloading	
	Vessel(Flight)/Frequency		B/L(AWB) No.	
Outbound Details	Date / Port of Departue		Date of Loading	
	Vessel(Flight)/Frequency		B/L(AWB) No.	
	Destination		Container No.	

3. Application

1. I confirm that the cargo above is temporarily installed in our bonded area under the control of KCS(Korea Customs Service) preparing for their final destination(country) without any additional works excluding unloading, reloading and other demanded operations to sustain the stationary state, and all information stat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accurate.
2. I apply for the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Special Directive on the Processing Procedure of Transshipment Cargo」.

20 . . .

Applicant (signature)

○○ Customs, Republic of Korea, certifies non-manipulation of the cargo above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Special Directive on the Processing Procedure of Transshipment Cargo」.

20 . . .

Director of ○○ Customs (sea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